

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
 - 제5조제1항제1호 삭제(「건축법」 제81조의2제1호에 해당하며 제81조의3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) → 삭제
 -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→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(안 제5조제1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 - 아니하거나 → 않거나, 아니하는 → 않는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